|| 인공지능융합학과 ||

Depart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Convergence

│교육목적│

기독교 전인교육의 철학적 토대 위에 인간지능에 버금가는 컴퓨터 지능의 실현을 목표로 한 다. 정보통신 및 인공지능 기술의 진화에 맞추어 인공지능 및 지능형 반도체 산업의 전문화 및 인력양성을 위한 공학적 전문역량 함양을 기본으로 인문 사회학적 소양과 경영적 통찰력을 갖춘 전문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.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인성과 창의성을 두루 갖춘 미래 지향적인 인공지능 및 지능형 반도체 전문 인재를 육성하여 대학과 지역사회와 국가에 봉사하 고 21세기 인류의 복지를 선도할 수 있는 인공지능 전문가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.

│교육목표│

- 을 기반으로 OASIS 생태계를 주도할 R&BD 인재를 양성한다.
- 1. (On-demand) 사회 수요에 부합하고 창의적이고 경영을 이해하는 AI 기반 IT 전문 인재 양성
- 2. (Artificial Intelligence) 정보분석을 통해 미래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문제해결과 목표지향 AI 인재 양성
- 3. (SW/HW) IT융합기술과 경영 마인드를 통섭할 수 있는 IT융·복합전문 인재 양성
- 4. (Information) 공공·경영 데이터를 활용해 플랫폼을 구축·운영함 수 있는 창업가형 빅데이 터 전문가 양성
- 5. (Search) R&BD를 주도하며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

|내 규|

제1조 (전공) 본 학과의 전공은 인공지능공학, 지능형반도체공학, 경영정보시스템 전공을 둔

제2조 (입학) 대학원 학칙과 시행세칙을 준한다.

제3조 (교육과정)

- ① 지도교수가 제시하는 연구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취득하는 논문연구학점을 운영할 수 있다.
- ② 본 학과와 관련성이 깊은 교내의 타 학과 교과목은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.

제4조 (이수학점 및 졸업요건) 아래의 학점을 이수하고 논문제출 자격시험(외국어시험, 종합 시험), 논문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.

- 1. 석사과정은 대학원 공통 3학점, 전공선택 21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.
- 2. 박사과정은 대학원 공통 6학점, 전공선택 36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.
- 3. 석박사통합과정은 대학원 공통 6학점, 전공선택 51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.

구 분	석사과정	석박사통합과정	박사과정
대학원 공통	3	6	6
전공선택	21	51	36
논 문	Р	Р	Р
합 계	24	57	42

제5조 (외국어시험) 대학원 학칙과 시행세칙을 준한다.

제6조 (종합시험)

- ① 종합시험은 대학원 학칙과 시행세칙을 준한다.
- ② 시험과목은 지도교수가 지정한 3과목으로 한다.

제7조 (학위논문)

- ① 지도교수 및 학위논문과 관련된 사항은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을 준한다.
- ② 석사과정은 국내 학술진흥재단 등재 후보 학술지(학진 등재 후보지) 또는 국제 일반학술지 이 상의 학술지(SCI, SCIE, SCOPUS급)에 제1저자로 학생 본인, 교신저자는 지도교수로 하여 투고된 논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.
- ③ 석박사통합 및 박사과정은 국내 학술진흥재단 등재 후보 학술지(학진 등재 후보지) 또는 국제 일반학술지 이상의 학술지(SCI, SCIE, SCOPUS급)에 제1저자로 2편 이상 게재하여야 학위논 문 심사가 가능하다.

제8조 (대학원 인공지능융합과학과위원회)

- ① 목적: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과 각 학과의 중요사항을 종합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 인공지능융합과학과위원회를 둔다.
- ② 구성: 대학원 인공지능융합과학과위원회는 학과장과 학과교수를 중심로 구성하고 학과장을 위원장으로 한다.
- ③ 임기: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.
- ④ 기능: 대학원 인공지능융합과학과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연구 및 심의, 의결한다.
 - 1. 교육목표의 설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 - 2. 본 학과 교육과정의 편성 및 수정
 - 3. 대학원생의 학술활동 기획 및 시행
 - 4. 입학사정 및 졸업사정
 - 5. 논문지도 제반사항
 - 6. 논문지도교수 및 논문심사위원 선정
 - 7.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관한 사항
 - 8. 장학생 선발
 - 9. 학과운영예산
- ⑤ 회의: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,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위원장은 의결권 에 있어 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.

제9조 (원우회) 학생들의 연구 및 협력을 도모하는 자치기구인 인공지능융합과학과 원우회를 둘 수 있다.

제10조 (준용규정) 본 내규에 없는 사항은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을 준한다.

│부 칙│

- 1. 본 내규는 학문의 발전과 교과과정의 개편을 반영하기 위하여 대학원 인공지능융합과학과 위원회 회의에서 수정될 수 있다. 본 내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 회의에서 정하 는 바에 따른다.
- 2. 본 내규는 202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.